

<신규 조문 대비표>

개정 전		개정 후		비 고
제 1조 ~ 제 7조 <생 략>		제 1조 ~ 제 7조 <좌 등>		우대금리 항목변경
제 8조 우대금리 <생 략>		제 8조 우대금리 <좌 등>		
우대항목	내 용	우대항목	내 용	
주택청약 종합저축	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	군급여이 체	이 예금 만기월의 전전월말 기준 으로 당행 입출금통장에 12회이 상 군급여가 입금된 경우(군급여 이체 실적은 월1회만 인정하며,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)	
군급여이 체 또는 카드실적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 출금통장을 통해 3회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, 하나카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우 (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,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)	주택청약 종합저축	이 예금 가입월 포함 3개월이 되 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 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경우	
기초생활 수급자	<생 략>	기초생활 수급자	<좌 등>	
군인공제 회 병회원	<생 략>	군인공제 회 병회원	<좌 등>	
<신 설>	<신 설>	하나카드 결제	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으로 하나카드 체크(신용)카 드 결제실적이 3회이상 있을 경 우(하나카드 결제실적은 월 1회 만 인정)	
제 9조 ~ 제 12조 <생 략>		제 9조 ~ 제 12조 <좌 등>		
부칙 <생 략>		부칙 <좌 등>		
		이 특약은 2026년 4월 7일부터 가입하는 계좌 에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 합니다.		